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19일, 윤준병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제안

설명, 축조심사, 의결(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기금과 특별회계간 목적 연계성

기금은 일반적으로 특정사업이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나친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13조1)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의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르면 농특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상 구조계정),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증진 및 소득 보전사업,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사업(이상 농특세계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2),

빈집문제는 현재 농어촌이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과 농특회

1)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농특세계정)은 목적간 연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재원확보 필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은 재원 조성 위한 별도의 부담금이나 수입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³⁾, 재원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특별세 및 관세 수입 등을 통하여 매년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는 농특회계(농특세계정)로부터 전입을 받아,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재정적 기반을 보완하고 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농특회계 고유사업 위축 우려

농특회계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빈집 정비,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농특회계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특회계에서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3) 【타 기금 및 재원 사례】

기 금	주요 재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 법정부담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광고 사업 수입금,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한강수계기금	물이용부담금

【최근 5년 농특회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조계정	48,276	47,083	50,803	52,802	56,344
농특세계정	46,143	57,772	70,160	75,191	66,469
임업계정	8,325	9,301	10,058	9,867	9,756
합 계	102,744	114,156	131,021	137,860	132,569

※ 총계, 본예산 편성 기준
 ※ 농식품부 및 산림청 예산 포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24. 4. 11. 제출)

【최근 5년 농특회계 전출 현황】

(단위: 억원)

계정	세부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조계정	지특회계(자율) 전출	7,259	6,900	6,846	7,000	6,492
	지특회계(세종) 전출	-	-	-	9	5
	지특회계(지원) 전출	-	-	-	19	6,276
	FTA기금 전출	872	130	-	-	-
	축발기금 전출	850	1,508	1,455	1,455	1,455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2,000	-	-	-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31	-	-	-	-
농특세계정	재해기금 전출	1,000	750	-	-	-
	공익기금 전출	23,919	23,938	28,219	29,872	29,872
	구조계정 전출	9,927	21,113	30,495	34,779	25,019
임업계정	지특회계(자율) 전출	665	704	813	1,035	1,139
	지특회계(지원) 전출	1,093	1,382	1,646	1,828	1,900
총계		47,616	56,425	69,474	75,997	72,158

※ 총계, 본예산 편성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24. 4. 11. 제출)

농업분야 공적 재원이 한정적임을 고려할 때, 이처럼 농특회계에서 타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증가하는 경우 농특회계 내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등 고유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한편 농특회계로부터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농특회계가 자체의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다른 기금에 재원을 제공하는 기금의 기금으로 작동하게 될 우려도 있으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함.

4) 기금 및 특별회계간 기능 중복 우려

현재 농특회계의 농특세계정에 의해서도 빈집 정비·재생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특세계정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은 사업·예산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5) 농어촌특별세 일몰 관련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정 당시부터 한시적 세금으로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고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2034. 6. 30.까지 존속할 예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특회계(농특세계정)에서의 전입금을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주요재원 규정하는 경우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지

속적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폐기